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기술인력 포함)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영 제14조제2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 1)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도 포함.

- 2)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12의2호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기술인력 명부에 등재된 자)

③ 소방청장은 별지 제12의2호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전문적인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란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1) 귀하는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2) 귀하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결정사유
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관 중인 본인의 동의일로부터 최근 5년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이에 준하는 증세,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및 이에 준하는
증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및 이에 준하는 증세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하신 내용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신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결정사유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을 받은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별지 제12의2호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을 포함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소방청장은 별지 제12의2호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전문적인 업무 수행의</u>

③ ~ ⑦ (생 략)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생 략)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u>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